

정태춘의 <가요의 검열제 철폐 운동>에 관련한 일지 (요약)

◎ 1990 년

6월

새 음반 관계법 <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> 정부안 확정, 국회 상임위 제출
(가요, 비디오의 사전 심의 관련 처벌 규정 등이 현저히 강화된 법률안)

6월 30일

<민족음악협의회 준비위원회> 성명서 "음반법 개악 의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" 발표

1991 년

1월 29일

<민족음악협의회> 산하 <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>(위원장 정태춘) 구성하고 반대 성명

1월 31일

<음반법 개악 저지를 위한 민족예술인총연합공동대책위원회> 구성하고 반대 성명
(참여 단체: 민족음악협의회, 민족문학작가회의, 민족미술협의회, 전국민족극운동협의회, 민족영화위원회, 민족춤위원회, 민족사진위원회, 민족극위원회, 민족건축위원회).

2월 7일부터 8일까지

<음반법 개악 저지를 위한 철야 농성> (위의 <민예총 공대위>)

2월 8일

<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> 국회 본회의 통과 (3월 8일 공포/6월 8일 시행)

5월 15일 (홍사단 대강당)

"음반법에 관련된 정태춘 기자회견 및 비합법 음반 <아, 대한민국..> 발표회"

공륜의 사전 심의를 거부한 음반 <아, 대한민국..> 판매, 배포

(이후, 전국의 대학과 서점, 진보운동 조직을 통한 판매. 집회장, 공연장 등에서 싸인 판매 진행)

◎ 1993 년

10월 20일(수) (홍사단 대강당)

<가요의 사전 심의 거부와 관련한 정태춘 기자회견 및 정태춘 박은옥의 새 음반 발표회>

공륜의 사전 심의를 거부한 정태춘, 박은옥의 새 음반 <92년 장마, 종로에서> 출판과 배포, 사인 판매, 시민 지지 서명 운동 개시

10월 30일(토)

KBS 1TV 생방송 심야토론 <가요, 영화의 사전 심의>

* 토론자: 김동호 (공연윤리위원회 위원장)/ 김순규(문화체육부 예술진흥국장)/ 조강환(동아일보 논설위원)/ 정태춘(가수)/ 정지영(영화감독)

11월 1일(월)

<문화체육부>, 서울 지검에 정태춘 고발

* 위법 행위: 1, 제작업자 등록 없이 음반 제작/ 2, 공론 심의를 펼치지 않은 음반 배포

* 적용 법규: <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> 제2항, 제24조 1항 1호, 4호.

제3조 제1항, 제16

* 음반 내용: 제명/ <92년 장마, 종로에서> 수록곡/ <양단 몇 마 름> 외 8곡

11월 5일(금)

KBS 1TV <노영심의 작은 음악회> “정태춘·박은옥 특집” 방영

제작진의 논의를 거쳐 공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신곡을 포함하여 50분간 녹화 방영
· 방영 후 담당 PD 박해선 ‘경고’ 징계.

<문체부>, 각 시 도 공보실 등에 위 음반 수거 지시 공문 발송

◎ 1994 년

1월 25일(화)

<검찰>, 정태춘 불구속 기소

* 적용 법규: ‘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’ 제24조 제1항, 제1 호, 제4호, 제3조 제1항, 제16조 제2항, 제25조 제1항, 제6조 제1 항, 제24조 제2항, 제25조 제2항 ‘형법’ 제37조, 38조, 40조.

1월 26일(수)

사단법인 <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>, “검찰의 정태춘 기소에 관한 성명” 발표

3월 2일(수)

<서울형사지방법원>, 정태춘에게 첫 번째 공판을 위한 피고인 소환장 발부

* 사건 번호: 94 고단373/ 재판일: 94년 3월 8일(3월 22일로 연기).

* 정태춘 변호사 선임(해마루 합동법률사무소 천정배 변호사 (노무현 추천))

3월 20일(일)

정태춘, “가요검열제 철폐 운동 관련 자료집 증보판” 발간, 배포

3월 22일(화)

정태춘 기소 건(<94 고단 373>)에 대한 1차 공판

* <서울형사지방법원> 1단독, 변진장 판사(제317호 법정) (검찰 및 변호인 신문 등 사실 심리)

4월 19일(화)

정태춘 기소 건(<94 고단 373>)에 대한 2차 공판

* 정태춘, 본건 관련 법률에 대한 ‘위헌법률심판 제청’을 담당 재판부에 신청

5월 10일(화)

정태춘 기소 건(<94 고단 373>)에 대한 3차 공판.

담당 재판장(변진장 판사), 위헌제청 결정 판결. 재판 중단

주문/“신청인을 피고인으로 한 ‘서울형사지방법원 93 고단 373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’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, 2항, 제24조 제1항 제4호,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신청한다.”

헌법재판소 접수 번호 <94 헌가 6> (3 지정 재판부)

7월 8일(금)

정태춘 노래 모음 책 <정태춘 2 / 92년장마, 종로에서> 출간 (한울출판사)

(가요 검열제 철폐 운동 자료와 사진, 새 앨범 수록곡들의 가사 악보 등 수록)

◎ 1995 년

2월 8일(수)

<음비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> (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/ 문화체육부)

(이중환 사회, 지정 토론자 정태춘 외 15명 참가 / 영상물,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 관계자 등)

2월 27일(월)

정태춘, <“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” 개정에 관한 의견서> 문화체육부에 접수

3월 7일(화)

정태춘, 헌법재판소에 <위헌 심판 신청 건에 관한 결정 촉구서> 접수 (대리인 천정배 변호사)

3월 10일(금)

<법무부>, <“음비법 위헌 제청 건”에 관한 의견서> 헌법재판소에 제출

(요지 / 예술 표현의 자유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. 현행 사전 심의제와 공륜은 검열제나 검열 기구가 아니다. 본 건의 기각 결정을 요청한다)

6월 27일(화)

정태춘, <UN 인권위원회 (Commission on Human Rights) 산하 <의사 표현에 관한 특별 보고관 (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)> 아비드 후사인(Abid Hussain) 씨와 “가요 검열제 철폐 운동에 관한 면담” (한남동 UNDP 사무실)

6월 29일(목)

<한국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토론회>

참가자 / 천정배(사회), 김중서(교수), 김선수(변호사), 손석춘(언론노동자연합 정책실장), 정진상(교수), 정태춘 / 아비드 후사인 (Abid Hussain) 씨 참관

8월 29일(화)

<“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” 개정을 위한 공청회>

(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/ 주관 ; 민주자유당 국회의원 박종웅)

그간 문체부에서 작업해 온 개정안의 결과물을 박종웅 의원의 의원 입법 형식으로, 개정 시안으로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한 공청회

* 주요 골자

- 1) 가요에 대한 일률적 사전 심의제 폐지
- 2) 공륜의 선별적 <직권 심의제>
- 3)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음반의 판매 중지나 제한, 수정 삭제 지시 명령 권한 부여

* 정태춘, 공륜의 직권 심의제 반대 입장 표명

8월 30일(수)

<민족예술인총연합> 성명

“민자당의 음비법 개정시안 중 직권 심의제 반대, 검열제 완전 철폐하라”

9월 13일(수)

정태춘, 국회 방문. 의원 면담과 의견서 제출

“직권 심의 반대, 수정 입법” 요구 (민자당 박종웅, 민주당 박계동, 새정치국민회의 정상용, 자민련 정진영 의원실)

의견서 <가요 창작인에게 열린 상상력을, 대중에게는 아름다운 노래를> 배포

- 1) 민자당의 <음비법 개정안 시안>에 대해 반대한다
- 2) 정부의 <공륜의 직권 심의제> 신설 불가피론에 대한 반론

11월 14일(화)

국회 <문체공위>, 법안 심사 소위원회 개최

국회 문체공위 상임위원회 개최 (소위원회 합의대로 <음비법 개정안> 만장일치 통과)

11월 17일(금)

국회 본회의, <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> 만장일치 통과 (박종웅 의원 입법)

◎ 1996 년

6월 1일(토)

가요 사전 심의제가 폐지된 <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> 개정 시행

6월 7일~9일

<가요 검열제 철폐 기념 콘서트 “자유”> 서울대노천극장, 문화관

신해철, 조동진, 한영애, 신성우, 장사익, 양희은, 강산에, 노찾사, 뽀뽀밴드, 꽃다지, 윤도현, 정태춘 박은옥 등 출연

*** 정태춘 박은옥 앨범 <아, 대한민국..>, <92년 장마, 종로에서> 합법 출시**

10월 31일(목)

<헌법재판소>, 가요 사전 심의제 위헌 판결

참고/

1933년, 일제 치하 조선총독부는 <레코드취체 규칙>을 제정하여 대중가요를 검열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도는 해방 후에 잠시 사라졌다가 박정희 정권에서 다시 등장했다.

1966년 1월, 정부는 <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>를 창설하였고, 1975년에 “공연의 공공성과 그 질서 및 품위를유지, 향상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공연 풍토를 정립하”기 위한 「공연법」의 개정 에 따라서 <공연윤리위원회>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. 역대 위원장은 오종식, 김광섭, 최창봉, 이영희, 곽종원, 김동호, 윤상철, 김상식 등이다.

조직은 위원장 아래 사무국장을 두고, 그 밑에 총무부와 기획조사부를 두어 사무 집행을 맡아 왔으며, 재정은 국고 보조금, 문예진흥원지원금, 영화진흥공사 지원금, <심의료> 등과 기타의 재정으로 운영되어 왔다.(참고로, 가요 <심의료>는 곡 당 3,000원, 영화는 편 당 1백 만 원을 가요 창작자 또는, 영화 제작자가 납부)

회의 기구로서 윤리위원회(위원장 등 15명)에 5 개의 전문 심의위원회와 3 명 내외의 상근 심의위원을 두었다.

무대공연물 전문 심의위원회(심의위원 6명), 영화 전문 심의위원회(심의위원 11명), 가요·음반 전문 심의위원회(심의위원 6명), 비디오 전문 심의위원회(심의위원 6명), 광고물 전문 심의위원회 (심의위원 3명) 등이 있었다. 각 분야별로 윤리위원이 1 명 씩(무대 공연물 2명) 구성되어 전문 심의위원회 의장직을 맡아 수행하였다. 또한, 매달 <심의월보>를 발행하는 한편, 각계의 의견 종합을 위한 간담회, 심포지엄과 세미나를 개최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였다.

그러나 각 분야 예술인들의 창작 표현의 자유와 공연물 제작업자의 재산권, 그리고 윤리 심의에 있어서 시대적·사회적 변화에 따르는 심의 기준의 변화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게 제기되었다.

그 결과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영화사전 검열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고 등급제의 정착을 위한 과도 체제로 <공연예술진흥협의회>(위원장·서기원)가 구성되었다. 그 후, 1998년 6월 10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김수용(金洙容)을 위원장으로 한 <영상물 등급위원회>가 발족됨으로써 사실상 <공연윤리위원회>는 해체되었다.

* <가요 검열제 철폐 운동>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 <정태춘 2 / 92년 장마, 종로에서>(한울출판사)에 실려 있습니다.